

산림청 노는 땅에 나무(밀원수)심기!

- 유희토지에 나무심기, 산림청에서 현금으로 지원-
1ha, 3,000평 최고 2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산림청에서는 종전의 유희토지 조림시 묘목대 및 식재·인건비만 지원됐던 법규가 2008년 1월 1일부터 조림목 주위에 부직포(1m²1m)설치 비용까지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림목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 시책은 농·산촌 소득은 물론, 고령화와 영농조건의 악화로 인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희토지를 유해 탄소 흡수원 및 자연 경관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유희토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9호에 따른 한계농지로서 2년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를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유희토지 조림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산지과수, 특·약용수종과 화목류 위주로 토지소유주가 직접 나무를 식재 하면 정부가 현금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수 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식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은 전체 조림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부담 10%를 제외하면 1ha(3,000평) 기준으로 최고 2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농·산촌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

식이 아닐 수 없다.

유희토지에 조림을 하고 싶은 토지 소유주는 조림을 하기 전년도 11월까지 각 시·군·읍·면·동으로 조림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림부서에서 조림 신청지 현지 확인 후, 현지 확인이 끝나면 신청자는 1월말까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수립한 조림 계획을 통보해야 2월말에 조림허락을 받을 수 있다.

봄철(3-4월)부터 가을철(9-11월)까지 나무 심는 시기는 신청자의 자율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원금 교부 신청은 5월과 11월에 각 시·군·구 산림부서로 조림실적 증빙사진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받은 산림부서에서 조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집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것도 조림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한다.

조림이 끝난 후에는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 혹은 판매, 고사시키는 행위는 제한된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적발 될 시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유희토지에 대한 올바른 조림 목적과 계획을 잘 세워 효율적인 토지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수종별 식재 기준과 유휴토지 조림 수종

구 분	수 종	식재량 (ha당 기준)
산지과수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400~600 그루
특·약용수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가자, 두충나무, 헛개, 음나무, 참죽나무, 옷나무, 다르, 쉬나무, 두충, 두릅, 당풍, 고로쇠, 느릅, 동백, 황칠, 후박나무 등	1,500 그루
용재수종(장기수)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 삼나무, 편백, 은행, 느티, 복자기, 마가목, 벗나무, 층층, 매자, 화살, 당단풍, 산딸, 쪽동백, 이팝, 채진목, 때죽, 가죽, 낙우송, 회화, 칠엽소, 향나무, 팽팽나무	1,500 그루

■ 신청 및 지원절차

